

학생지도및안전관리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가천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생들의 면학, 학생지도, 학생진로와 관련된 사항과 안전을 관리하는 학생지도 및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본 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장, 학생복지처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총무처장, 국제교류처장, 취업진로처장, 학생생활관장으로 구성한다.

②본 위원회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되며,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.

③위원장은 위원회 산하에 사안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실무위원회 위원은 본교 교·직원 중에서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학생복지처장이 위촉한다.

⑤실무위원회는 글로벌 및 메디컬캠퍼스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3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2. 학생지도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각 대학간, 부서간 협조에 관한 사항
3.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
4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지원에 관한 사항

제4조(실무위원회의 기능) 학생복지처장의 위촉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

1. 학생활동 지도 방침에 관한 사항
2. 학생활동 내용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
3. 학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4.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

제5조(임기)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, 실무위원회의 경우 보직자는 보직재임 기간, 임명직 위원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위원장은 학생지도 및 안전관리에 관련된 대책과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, 또는 중요정책 결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수시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6-1-34~2 제6편 위원회

제7조(주관부서) 본 위원회 운영은 학생복지처에서 주관한다.

제8조(예산) 본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계상을 원칙으로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.

제9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